

2006. 12. .

거창군의회 의결안건 제출(안)

【 '07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

'07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6년 12월 일

제출자 : 거창군수

I. 제안사유

- '05년말 기준 거창읍의 하수관거정비율이 32%에 불과하며, 하수관거 시설을 2010년까지 80%로 시설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예산확보노력과 자체사업 추진 노력 등을 기하고 있으나,
- 환경부의 시책사업(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 우선추진과 수혜인구 많은 시 우선지원, 우리 군의 재정부족 등으로 하수관거 정비율 제고는 답보상태 실정임.(매년20억 투자시 19년이상 소요)
-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지원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므로,
- 우리군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부담금을 20년간 상환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함.

II. 의무부담내용

- 사업명 : '07 강북지구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 중앙, 대동, 가지, 서변리 일원
(거창읍 강북하수처리구역)

- 사업량 : 하수관거 정비 L=39.4km
배수설비 정비 6,500개소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1식
- 사업기간 : 2007. 11 ~ 2010. 12(38개월)
- 총사업비 : 37,063백만원(국비: 재정사업 국고지원비율 70%준용)
 - 부가세 제외, '05. 10. 기준 현재 불변가격
 -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 금액으로 가감조정(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법 - 붙임 참조)
- 선부담자 : 사업시행자(민간 투자자)
- 후상환자 : 주무관청(거창군)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이자는 5년만기 국고채금리 + a(가산율) 수준)
- 자금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추정)	국비(70%)	지방비(30%)	비고
37,063	25,944	11,119	지방비 부담액의 50% 수계기금 지원 계획

※ 의무부담 총액에 따라 자금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지원액 변동 가능

Ⅲ.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법 1부
4) 관련법규 발췌 1부. “끝”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07 강북지구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 BTL사업방식 정의 [Build(건설) ⇒ Transfer(이전) ⇒ Lease(임대)]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자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자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 중앙, 대동, 가지, 서변리 일원
(거창읍 강북하수처리구역)
- 사 업 량 : 하수관거 정비 L=39.4km
배수설비 정비 6,500개소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1식
- 사 업 비 : 37,063백만원(BTL방식 민투사업)
- 사업기간 : 2007. 11 ~ 2010. 12(38개월)

□ 추진경위

- '06. 4. 19 : '07 BTL사업 선정보고(군 ⇒ 환경부)
- '06. 7. 13 : 현지실사단 우리군 방문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합동)
- '06. 8. 25 : '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 확정(환경부 ⇒ 시·군)
 - 전국 : 1개광역시, 14개 시·군 L = 1,539km, 13,070억원
 - 우리군 : L = 39.4km, 370억원
- '06. 10. 19 : '07 BTL사업 준비금 반영통보(환경부 ⇒ 군)
 - 사업비 : 518백만원 (국비 259, 군비 259)
 - 용 도 :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환경성 검토 등 용역 소요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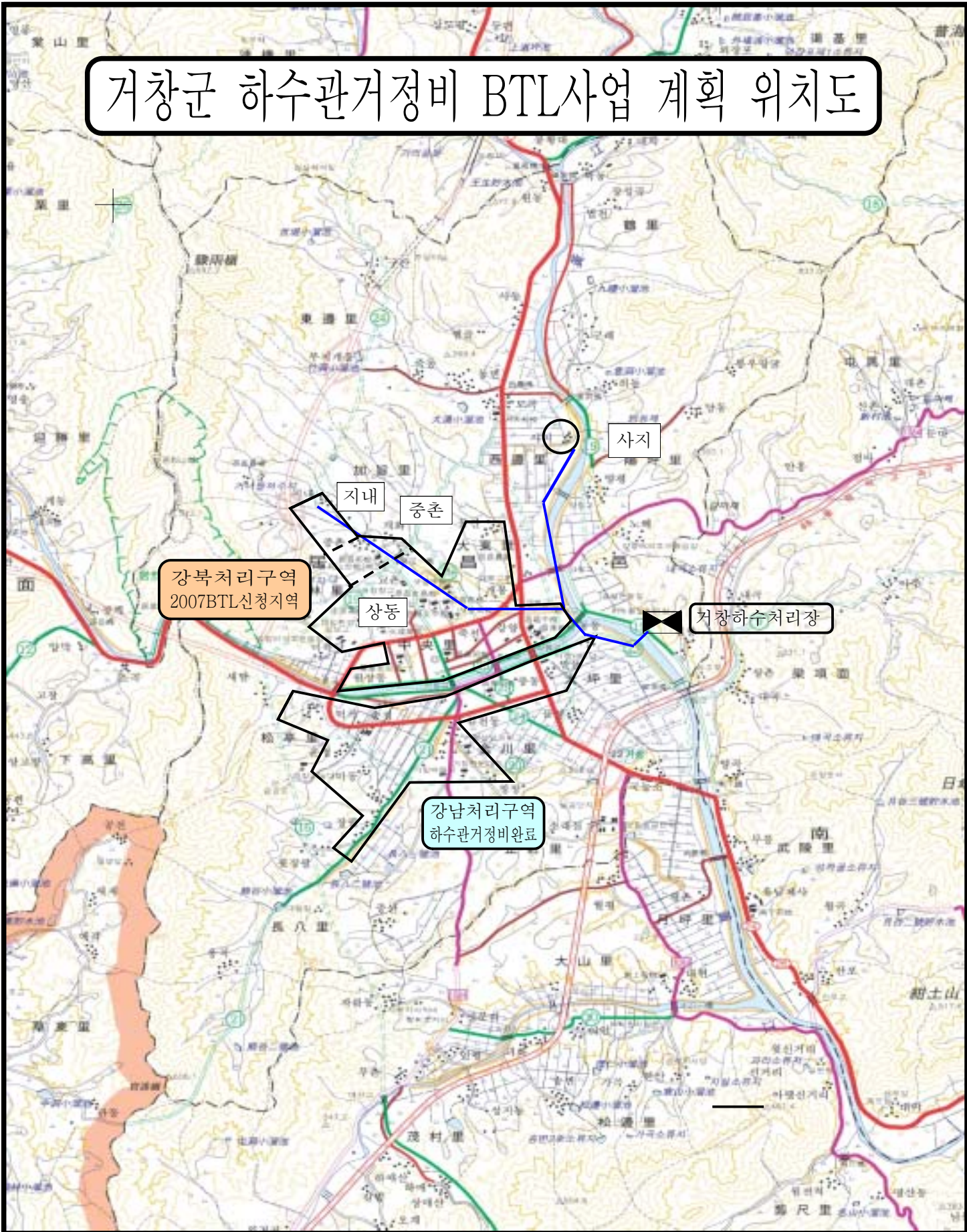
□ 향후 추진계획

- '06. 12 : 군의회 BTL사업 추진 지방비 의무부담 의결
- '07. 1 : 타당성,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민자적격성조사,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발주
- '07. 6 : 시설사업 기본계획 검토 【PIMAC(공공사업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
- '07. 8 :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관보, 3개 이상의 일간신문, PIMAC홈페이지)
- '07. 8 : 사업 설명회 개최
- '07. 11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08. 3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08. 6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08. 7 : 공사 착공
- '10. 12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방류 수역의 수질향상
-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군민의 보건 위생증진
-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계획 위치도



정부지급금 산정 · 지급방법

□ 정부지급금의 산정(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frac{\text{수익률}}{1-(1+\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건설이자+물가변동비
- 사업수익율 : 5년만기 국채금리수준에 플러스 a 추가
- 임대기간 : 시설준공일로부터 20년(80분기)

○ 운영비

- 표준비용 산정 : 시설완공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 물가변동비 반영 : 운영비는 운영기간(20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매분기 균등액(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분기 물가 변동율(소비자물가지수 활용)을 반영하여 조정

□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분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방법 :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는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주체 : 주무관청(거창군)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994.3.16, 19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 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